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1.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2. 경제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3. 교육문화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4. 사회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5. 국가안보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6. 형사법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7. 정보통신인프라추진분과위원회
8. 정보보안추진분과위원회
9. 입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0. 사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1.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11조의 제목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을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부처별 구분방식에서 앞으로는 분야별 구분방식으로 개편하여 분야별 통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031호, 2006. 10. 4. 공포·시행)되어 한국전산원의 명칭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11월23일

국무총리 한 명 속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197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및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

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신청 및 발급, 비용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의3중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제16호중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제24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1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법 제8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별표 1 대상자란의 제6호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쉽게 받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영 제23조의3 제2항)

- (1) 건설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작업장 이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는 부정확하고 신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고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 신고실적 및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지원(영 제30조의3 신설)

- (1)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훈련비용의 사전부담 등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사전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훈련기관에 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함.
-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고용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